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2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실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관련 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요건, 조사 대상, 조사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4장 제4절 '민간 소비자권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제27조의 2 내지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④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아닌 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3(임원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단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의4(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소비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권익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소비자 분야의 소송, 조정 등 피해구제와 관련한 업무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소비자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제27조의5(정관 기재사항)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6(사업) 재단은 제27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4.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5.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의7(재단의 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임·징계 명령을 받은 재단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 제70조 제1항 중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법 70조 제1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협의체

법 제7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삭제한다.

법 제76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중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제27조의2제6항,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견청취 등) ①·② (생략)	제26조(의견청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실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관련 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신설>	⑤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요건, 조사 대상, 조사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신설>	⑥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신설>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4절 민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제27조의2(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④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아닌 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7조의3(임원 등) ①재단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취

	임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단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의4(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소비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권익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소비자 분야의 소송, 조정 등 피해구제와 관련한 업무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소비자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신설>	제27조의5(정관 기재사항)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7조의6(사업) 재단은 제27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4.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5.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27조의7(재단의 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

	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임·징계 명령을 받은 재단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신 설> 2.~4. (생략) <신 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및 단체 등) ①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협의체 2.~4. (현행과 같음)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	<삭 제>

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삭 제>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생 략)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생 략)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청구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86조(과태료)① (좌동)----------. 2. 제27조의2제6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44-200-4406